

제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 반대 의견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1.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개요 및 비준동의 반대 의견서 제출 배경

- 정부는 2019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총 9차에 걸친 협의를 거쳐 2021. 3. 18. 최종 문안 합의를 마친 후 2021. 4. 6. 제14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21. 4. 8.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서명하였음

- 이후 정부는 2021. 4. 13. 국회에 본 특별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였음. 한편, 이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2021. 3. 9.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최종 타결 소식을 전하며 이번 협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자평한 바 있음

- ① 지난한 협상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라는 우리의 원칙을 지켰던 협상
- ②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근로자의 고용과 생계안정을 강화하고 방위비 분담금의 국내경제 환류 성과
- ③ 6년간 다년도 협정을 체결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
- ④ 연간 증가율은 2020년은 동결, 2021년에만 예외적으로 인건비 관련 제도 개선에 따른 6.5%를 반영하며 13.9%이며 2022년-2025년은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 적용

- 그러나 외교부의 자화자찬과 달리 이번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결과는 '합리'적이지도 '공평'하지도 않은 불평등한 조약의 전형이라 할 것임. 이에 대한 구체적 검토는 항을 바꾸어 자세히 상술할 것임
- 무엇보다도 더욱 큰 문제는 이처럼 불평등 조약을 체결해놓고도 오히려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 운운하며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태가 맹목적 관행으로 굳어져 정부의 자정작용을 기대하기 매우 난망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임
-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의 실상을 밝혀 헌법으로부터 예산 심의 확정권 및 조약에 대한 비준동의권을 부여받은 국회로 하여금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부결시킴으로써 정부의 실책을 바로잡는 상식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분명히 촉구하고자 본 의견서를 제출함

2.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전도된 원칙과 예외

- 2021. 4. 13. 국회에 제출된 비준동의안의 공식 명칭은 다음과 같음.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
- 쉽사리 독해하기 어려운 비준동의안의 내용을 단계적으로 풀어 보면 다음과 같음. 우선 출발점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이하 '한미 상호방위조약')임. 이는 1953년 서명되고 1954년부터 발효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용(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규정하여 한국 내 미군 주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바로 이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체결된 것이 저 유명한 SOFA 협정(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인바, SOFA 제5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

제5조 시설과 구역-경비와 유지

1. 합중국은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한민국이 부담하는 경비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유효기간동안 대한민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다.

2. 대한민국은 합중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본 협정의 유효기간동안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비행장과 항구에 있는 시설과 구역처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을 포함한 모든 시설, 구역 및 통행권을 제공하고, 상당한 경우에는 그들의 소유자와 제공자에게 보상하기로 합의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시설과 구역에 대한 합중국 정부의 사용을 보장하고, 또한 합중국 정부 및 그 기관과 직원이 이러한 사용과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제삼자의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 SOFA 제5조가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은 미군에게 시설과 구역만을 제공할 뿐 미군 주둔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전적으로 미국이 부담하는 것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한 소파 협정의 확고한 '원칙'임

- 즉, 한미 상호방위조약 및 SOFA에 의거할 때 주한 미군 주둔을 위한 경비의 부담 주체는 미국임이 분명함.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에 '특별협정'이란 단어가 삽입되는 이유 또한 한국의 방위비 분담 자체가 '예외'적인 것임을 보여주는 것임
- 이처럼 원칙과 예외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한미 간에 체결하는 것과, 그에 따라 한국이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마치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음. 이는 원칙과 예외가 전적으로 전도된 것임
- 요컨대, 원칙과 예외가 전도된 인식을 근본적으로 철저히 극복하여 원칙을 바로 세워야만 한다는 관점이야말로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나 국회가 마땅히 추구해야 하는 지향이라 할 것임.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일련의 협상 과정은 물론 국회 비준동의에 이르기까지, 원칙과 예외가 전도된 관점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면 그 폐해는 너무도 막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임. 이번 제11차 협정의 결과는 그 폐해의 대표적 사례라 할 것임

3.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문제점

가. 유례없는 분담금 인상, 국방비 증가율과 연동하는 분담금 인상률

-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의 분담금 인상은 유례없이 높은 인상률임. 2000년 이후 주한미군기지의 통폐합과 재편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집행 방위비 분담금이 축적되어 온 한편 방위비 분담금 불용액이 증가되는 등의 이유로 분담금 증액이 제한되어 왔음. 기본적으로 이런 맥락을 고려할 때 이번 11차 협정의 분담금 인상률은 전적으로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음

- 또한, 이번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의 적용 기간 동안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을 방위비 분담금 인상율과 연동시킨 점 또한 심각한 문제임. 기본적으로 한국의 국방비 증액 여부는 정부 예산 수립 및 심의 과정에서 각 사업의 목적과 성격을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를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를 증액하는 근거로 삼기 어려움
-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한국 또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는 시점이며 당분간 이런 추세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우리의 재정 운용 현황을 반영하여 주한미군 주둔 지원비 인상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음
- 한국의 국방 역량과 방위비 분담금을 연동시킬 것이라면, 한국 국방비가 늘어날수록 주한미군에 의존하는 정도가 낮아져야 합리적이며 따라서 방위비 분담금 또한 축소되어야 마땅함
- 그럼에도 이번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맹목적으로 방위비 증액을 당연한 것으로 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을 연동시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임. 따라서 헌법이 부여한 예산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이번 비준동의안을 부결시켜야 마땅함
- 과거의 전례를 살펴보더라도 이번 제11차 협정은 합리적이지 않음. 예컨대 7차, 8차, 9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경우 모두 협정 적용기간 동안의 분담금 인상률을 국방비 증가율이 아니라 물가상승률에 연동시킨 바 있음.
- 또한 역사상 최초로 5년이라는 장기간 적용되는 협정을 맺었던 8차, 9차

협정의 경우 분담금의 과도한 인상을 막기 위해 그 인상율의 상한을 4%로 제한한 바 있었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방예산은 연평균 6.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¹⁾되고 있으며 제11차 협정의 경우 상한선 제한 또한 미비하다는 점, 이미 방위비 분담금 총액이 과도한 수준으로 증액된 것을 기준으로 다시 증액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협정이 맺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제11차 협정의 인상률은 유례없이 높아 한국에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이 가중된 것임

나. 분담금 증액의 이유가 될 수 없는 인건비 배정 하한의 상향 조정

- 먼저 정부는 2021년도 분담금 총액을 2020년 대비 13.9% 증액된 1조 1,833억 원이라고 밝히며 이는 2020년도 국방비 증가율 7.4%와 방위비 분담금 인건비 최저배정비율 확대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것으로 13.9%는 제도 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을 감안한 예외적 증가율이라고 밝힘
- 또한 정부는 인건비와 관련하여 인건비 배정 비율 하한선을 2021년부터 종전의 75%에서 87%까지 확대하고, 이 중 85%는 종전의 노력(endeavor) 규정에서 의무(shall) 규정으로 변경하였으며, 미국 측이 최소한 2% 이상을 추가로 배정토록 노력(endeavor)키로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고 밝힘
- 그러나 국방부가 밝힌 '특별협정 분담금 인건비 연도별 집행 내역'에 따르면, 2019년도 분담금으로 집행된 인건비가 차지하는 한국인 고용원 8,642명에 대한 비용은 총 인건비의 88.7%에 달하여 이미 한국이 부담하는 인건비는 85%를 넘어선 상황임

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 검토 보고서

- 때문에 2021년에 타결한 제 11차 협정에서 인건비 배정 의무 비율을 총 인건비 대비 85%로 하한선을 설정하였다고 하여 2019년 대비 인건비가 증액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임. 따라서 총 방위비 분담금이 늘어날 이유 또한 될 수 없는 것임. 오히려 의무 비율을 85%로 정한 것은, 2019년 인건비 집행 대비 약 4% 가까이 방위비를 감액할 근거로 삼는 것이 타당함

다. 일관성 없는 국방비 증가율 적용의 문제점

- 2019년의 경우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 8.2%는 2019년 당해 연도의 국방비 증가율인 8.2%에 연동되었음. 그렇다면, 2021년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 또한 당해 연도 증가율인 5.4%를 적용했어야 마땅함. 2019년으로부터 불과 2년밖에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이유가 전무하기 때문임
- 그럼에도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2021년도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의 기준으로 2021년도 국방비 증가율 5.4%가 아닌 2020년 국방비 증가율 7.4%를 적용하였음. 이처럼 한 해 전의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할 것이라면 2019년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 또한 2019년의 국방비 증가율 8.2%가 아니라 2018년 국방비 증가율인 7.0%에 연동되었어야 마땅함
- 결국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을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시키기로 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해에 따라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과 '당해 연도 국방비 증가율'을 아무런 기준이나 설명조차 없이 선택적으로 적용한 것은 보다 높은 증가율을 선택하여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을 더욱 많이 확보하고자 한 의도가 아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음

- 요컨대 이는,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손쉽게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방비 증가율을 선택적으로 취사선택하여 아무런 기준 없이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임. 막대한 국민들의 혈세가 소요되는 방위비 분담금 책정을 위한 기준이 이처럼 고무줄 잣대처럼 운영되고 있는 것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 협정의 현실이라는 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장면이라 할 것임

라. 유례없는 6년이라는 장기 협정 적용기간

- 문재인 정부는 9차 협정 만료 후 10차 협정 체결을 위해 트럼프 정부와 협상을 벌였으나 난항을 겪었고 결국 유례없는 국방비 증가율을 반영한 적용 기간 1년짜리 협정을 체결한 바 있음. 그 후 2020년 적용 협정을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미국의 정권 교체에 이르게 되었던 것임
- 결국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11차 협정의 합의에 이르게 되었는데, 11차 협정의 적용 기간이 6년에 이르는 것은, 10차 협정까지 감안할 경우 총 7년 동안 적용되는 협정을 한 정부에서 합의한 셈임
- 결국 이 경우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된 극히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이 6년간 지속될 수밖에 없어 이는 우리가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임. 이번 협정 기간의 유효 기간이 6년이라는 유례없는 장기간으로 설정된 것이, “양국 정부 선거의 여파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되는 기간 이기를 희망한다”²⁾고 밝힌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견해와 같은 의도인 것이라면 이는 매우 우려스러움

마. 제도개선 없는 합의의 문제점

2) 미 국방부 “방위비 분담금 합의안 도출 만족...인도태평양 핵심축 재확인”(VOA. 2021.3.9.)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dod-sma-indopacific-linchpin>

- 정부는 이번 제11차 협정이 제도 개선을 통해 한국 근로자의 고용과 생계 안정을 강화하고 방위비 분담금의 국내경제 환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음. 이와 관련하여 방위비 분담금의 인건비 배정 비율 하한선을 2021년부터 종전의 75%에서 87%까지 확대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그러나 한국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된 것은 성과라고 보기 어려움. 한국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 결과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이 달성될 것이라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임. 고용 안정의 책임은 여전히 한국인 노동자들 고용한 주한미군과 미국 정부 측에 있기 때문임
-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에 합의하여 무급휴직 재발 가능성을 차단하였다는 것 또한,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의 책임을 한국이 대신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한국 측 부담의 증가를 성과로 포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심히 의문임
- 무엇보다도, 지난 8차, 9차, 10차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의 집행 결과를 살펴 볼 때, 방위비 분담금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 온 미집행 분담금 발생 및 처리에 대한 제도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었음에도 이에 대한 개선은 부재하다는 점이 이번 11차 협정의 근본적 문제점임
- 특히 국회 외교 통일위원회는 2014년 9차 협정 및 2019년 10차 협정 심사 과정에서 각 3건, 6건의 부대의견을 달아 정부의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킨 바 있음. 당시 합리적인 분담기준 마련, 회계감사의 실시, 미집행 군수지원 분담금의 환수, 미군 역외자산 정비 지원 관행 개선과 궁극적 폐지,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 등이 요구되었으나, 이번 협상 결과는 국회의 이러한 지적을 사실상 거의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이러한 정부의 행태가 매년 반복되는 것은 민의의 대표기구인 국회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

바. 바이든 행정부에서 재현된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갈취' 행태의 변주

-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미국 정부와 벌인 10차 협정 협상 결과 2019년 방위비 분담금은 전년 대비 8.2%, 782억 원 폭등한 1조 389억 원이었음. 이처럼 트럼프 시대는 최초의 분담금 1조원 시대를 열었으며, 유례없는 1년 짜리 협정이 맺어졌고, 처음으로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을 방위비 분담금과 연동시키는 등 한국 입장에서 최악의 방위비 분담 협정이 체결된 시기였음
- 뒤이은 2020년 분담금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5배 인상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철수까지 언급하여 결국 협상이 중단되었고 협정이 없는 상태로 2020년이 지나갔음. 당시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태도를 '동맹 갈취'라고 비난했음
- 이후 미국 대선 결과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함에 따라 트럼프 시대의 비상식적인 분담금 인상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었음. 한국 정부 또한 바이든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협상을 할 것이란 요구와 기대에 직면하기도 했음
- 바이든 정부가 일본 정부와 주일미군 지원 특별협정 협상을 벌인 결과 지난 2월 분담금을 동결하는 협정에 합의한 점 또한, 한국 정부와의 협상도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기도 했음
-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와 맺어진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결과는

트럼프 시대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점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 최초로 6년이라는 장기간 협정을 체결한데다, 트럼프 시대에만 유일하게 도입되었고 많은 비판의 대상이었던 국방비 인상률만큼 방위비를 증액하는 방식을 다시금 채택하였음. 요컨대, 이런 증액 방식은 특별협정 30년의 역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임

- 이미 방위비 분담금 총액이 1조를 돌파하는 등 그 액수가 극도로 과도해진 상황에서, 분담금 증가율마저 유례없는 수치를 적용하게 되어 제11차 협정 결과에 따른 경우 분담금 폭등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
- 모름지기 바이든 시대의 협상이라면, 노골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로 인한 최악의 협상 결과였던 2019년의 분담금 폭등을 바로잡고, 특별협정 분담금 외의 한국의 부담 규모까지 감안하여 2020년 이후의 분담금은 감액하는 방향의 합의를 도출해냈어야 할 것임. 그 경우라야만 외교부 보도 자료에 언급되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합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임

4. 과제

가. 방위비 분담금은 폭등이 아니라 감액되어야 마땅함

- 우선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 지원 규모는 이미 막대하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할 필요가 있음. 한국국방연구원의 조사와 분석에 따르면, 2015년만 하더라도 한국이 미군 주둔과 관련하여 집행한 국방예산 및 국방예산외 지원은 2조4천억 원으로, 그 중 특별협정 분담금이 9천3백억 원, 나머지 1조5천억 원은 한미 SOFA와 여러 한미 간 합의에 기초하여 지원되어왔음. 여기에 SOFA에 따른 토지 무상 제공 등의 간접지원도 무려 1조에 이르며, 미군기지 이전사업으로 한국 정부가 2015년 부담한 비용만 해

도 7천억 원 수준임

- 이처럼 2015년 기준 미군 주둔에 따른 한국의 부담은 특별협정 분담금을 기준으로 할 때 그의 4배에 이를 정도로 막대한 상황임. 이런 사정을 반영하며 지난 8차, 9차 분담금 특별 협정 당시 분담금은 연간 2% 수준의 증액에 그쳤던 것임
- 특히 최근 수년간 미군들이 새로운 기지와 시설로 이사하는 동안, 한국은 이전에 따라 반환된 기지의 시설 철거 및 오염 토양 정화를 위해 수천억 원의 비용을 부담함. 이처럼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의하지 않은 주한 미군 지원 비용이 수조원 규모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한국의 부담은 이미 극히 과도한 상황임. 방위비 분담금이 감액되어야 마땅한 기본적인 이유임
- 또한 2000년대 초부터 진행되어온 미군기지 통폐합 작업이 마무리되어가고 있음. 때문에 향후 군사건설 사업은 방위비 분담금의 용처 중 하나인 군사건설 부문의 경우 향후 그 소요가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이 또한 방위비 분담금이 감액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라 할 것임
- 무엇보다도,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어 온 미집행 방위비 분담금 액수가 여전히 1조 원이 넘는 상황임. 예컨대 2019년 4월 국회에 보고된 2018년 말 기준 한국 정부가 밝힌 분담금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9,864억 원임. 미군측이 밝힌 2019. 12. 31. 기준 미집행 현금은 805,689,592원과 270,679,396.61 달러³⁾로 보고되어 이를 1달러당 1,100원의 환율로 환산할 경우 약 2,985억 원에 달함

3) 2019년 방위비분담금 연례집행 종합보고서

- 이처럼 미집행 방위비 분담금이 여전히 1조원이라는 엄청난 액수를 초과하는 상황은 신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핵심적 고려 대상이어야만 함. 이미 지불한 방위비 분담금 중 미집행 액수가 저토록 많은 상황에서, 신규 방위비 분담금 액수는 증액이 아니라 감액되어야 마땅함. 그럼에도 이번 제11차 협정은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도 해소하지 못한 채 유례없는 방위비 인상률을 용인해버렸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함
- 근본적으로, 한국방위에 있어 한국의 역할은 계속하여 증대되어온 반면 미군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음. 그렇다면 그에 상응하여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함께 이에 발맞춘 방위비 분담금 감소 방향을 조속히 마련해나가야만 함

나. 국회는 형식적 부대의견 제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 비준동의권을 행사하여야 함

- 국회는 다음의 사항들을 제대로 심사하고 실질적인 검증을 거쳐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하여야만 함
 - ① 한국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 맞는가?
 - ② 지금까지 국회가 제기했던 제도 개선이 실제로 반영되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를 강제할 수 있는가? 그 실효성 확보 수단은 무엇인가?
 - ③ 주한미군의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 종료 시점에 이르러 군사건설 사업 소요에 대한 전반적 조사와 구체적 평가에 기초한 협상이 맞는가?
 - ④ 한국이 부담하는 용산기지 이전사업과 한국이 지원한 분담금으로 총당된 연합 토지관리계획 사업은 제대로 보고되고 각 협정에 맞게 제대로 집행

되고 있는가?

- 매번 방위비 분담협정이 체결되고 나면, 국회는 치열한 문제제기 없이 마치 거수기처럼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왔음. 이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조약에 대한 비준동의권을 국회 스스로 포기해버리거나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국회의 자기 부정일 뿐 아니라 직무유기인 동시에 국회에 대한 헌법의 요청을 무시하는 것에 해당함
- 외교부와 정부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너무도 관행적으로 미국의 요구에 치우친 결과에 손쉽게 만족해버린 측면이 있음. 이러한 관성을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 스스로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움. 이미 스스로의 힘만으로 자정작용이 가능한 단계는 지났음
- 따라서 결국 이러한 정부의 안일한 행태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것은 국회 뿐이라 할 것임. 국회는 이번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해 실질적으로 비준동의권을 행사하여 이를 부결시킴으로써 만시지탄일 지언정 이제라도 외교부와 정부가 제대로 된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강제해야만 할 것임

5. 결론: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 부결의 불가피성

- 앞서 자세히 검토한 것처럼,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은 이전의 제8차와 제9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과 비교할 때 한국에 지나치게 불리한 것은 물론, 최악의 협정 중 하나인 제10차 협정과 비교해도 개선된 점을 찾아보기 힘들고 독소조항을 그대로 계승한 협정안임

- 이는 진정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금 특별협정을 바라온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미국의 요구에만 지나치게 경도된 명백한 불평등 조약이라 평가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국회는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의 주권을 지켜내기 위하여 반드시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부결시켜야만 함
- 촛불시민들의 염원을 통해 집권한 문재인 정부 하에서, 그것도 트럼프가 아닌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과 같은 불평등 조약을 수용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임
- 이러한 국민들의 바람은 이미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분명히 확인된 바 있음. 2019. 1. 25. YTN이 리얼미터를 통해 실시한 여론조사⁴⁾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요구에 대한 응답이 반대 58.7%, 찬성 25.9% 인 것으로 나타나 인상 반대의견이 찬성의견의 2배가 넘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2020. 12. 23. 발표된 통일연구원의 여론조사 또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무려 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분담금 증액에 동의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입증한 바 있음. 민의의 대표기구인 국회는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받아들여야만 함
- 지금까지 국회가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실질적 심사와 견제 기능을 수행하지 않은 채 일종의 거수기로 기능해 온 역사적 과오를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아야만 함. 불평등 조약인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의 부결은 문제를 바로잡기위한 최소한의 시작점이라 할 것임

4) https://www.ytn.co.kr/_ln/0101_201908121336483337